

##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 가. 선발예정인원 : 50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선발구분				비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	국가유공자(보훈청주권)	
계			50	40	3	2	5	
9급	시설관리	기계시설	30	22	2	2	4	
		전기시설	10	9			1	
		화공시설	10	9	1			

### 나.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참고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중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의2. 채점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행위를 복종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관련 [별첨 1] 참조

####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마.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해당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인천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에 따릅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과 중복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1]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계획”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 없음

2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9급	시 설 관 리	기 계 시 설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전 기 시 설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화 공 시 설	국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은 60분(10:00~11:00)입니다.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
-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8, 9, 9의2 등에 따름.

####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제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관련 인·적성검사 및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시 험 명	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회 임용시험	11.02.(월) 9:00 ~ 11.04.(수)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11.05.(목) 24:00까지]	필기시험	11.25.(수)	12.05.(토)	12.28.(월)
		면접시험	12.28.(월)	2021.1.11.(월) ~ 1.15.(금)	2021. 1.22.(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5

( 가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 취소는 취소기간 마감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취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의 JPG 형식,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함.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함.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분실 시 재출력 가능)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원서접수 시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휴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7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8 가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 1%	· 자격증 1개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라. ‘나’ 항과 ‘다’ 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최대 1개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사무 관리 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 리 부 야	7·8·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오.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최대 1개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직급/직렬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및 보건의직렬	6급이하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변호사	
		보 건 (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술직군 및 연구사·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5 참조(별첨 2)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명번호 입력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9**

**가.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 확인**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 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시설관리직은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정수사업소 등)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업·24시간 교대근무 직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반환하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별 개별 통지는 없습니다.
- 응시원서, 답안지,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 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여 각 시험 단계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여 장소 공고 시 응시생 준수사항을 별도 공지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관리지침(행정안전부) 등 반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 【첨부 1】

#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계획

### 1. 근거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 2.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계			5
9급	시설관리	기계시설	4
		전기시설	1

### 3. 시험 방법

- 가.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직급	직렬	직류	필기시험과목	세부 내용
9급	시설관리	기계시설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60문항(과목별 20문항), 4지택1형 - 시험시간: 60분(1문항당 1분)
		전기시설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임용시험 응시 자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함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나. 면접시험(제3차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다음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평정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li> <li>·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li> <li>·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li> <li>· 예의·품행 및 성실성</li> </ul>

#### 4. 응시자격(보훈청 추천 대상자만 응시 가능)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응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구분모집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만 응시 가능(추천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등은 인천보훈지청으로 문의)

나.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시험응시 대상자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보훈지청으로 선발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추천 의뢰를 하면, 법령에 정해진 배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확인 및 시험시행

라.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름

####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11. 02.(월) 09:00 ~ 2020. 11. 04.(수) 18:00

(취소마감일 : 2020. 11. 05.(목) 24:00까지)

나. 접수방법 :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추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접수

#### 6.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미 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들도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나.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반드시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